

교원 초과강의로 지급관련 업무지침

제정 2019. 03. 27.

8차 개정 2024. 12. 16.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 2024.12.16.)	
전임교원 책임시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책임시간) ① 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학부장의 기준 학기당 11시간으로 하며, 연간 22시간으로 한다. 단,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임상교원이 부속병원에 겸직하는 경우 진료시간을 고려하여 학부장의 기준 학기당 4시간, 연간 8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 시 계약서상에 책임시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사항을 우선한다. ③ 교원의 강의 담당시간은 교내·외 출강을 포함하여 학기당 23시간, 연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기획예산팀 지침	해당 학년도 예산집행지침

- 이 지침은 학부장의에 한하여 적용하며 전임교원(임상교원 포함)의 초과강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12.16.)
 - 연간 책임시간 :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하되 한의과대학 임상교원은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4.01.15)
 - 연간 책임시간을 1학기에 초과한 경우에는 1학기에 4회 분할하여 월말에 지급하며, 2학기에 초과한 경우에는 2학기에 4회 분할하여 월말에 지급한다. (개정 2024.01.15)
 - 삭제 (2021.12.21)
 - 폐강강좌의 경우 연간 22시간 이상 수업이 있는 경우에만 폐강기준에 의하여 시수를 계산하여 지급함
 - 연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40시간 초과에 해당하는 시간의 초과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09.23.)
- 학기당 총 수업시수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폐강강좌는 당초 수강인원(e-러닝 및 수강인원 0명 : 1주차, 1명이상 : 2주차)에 따라 시수 계산한다.(단, 2주차는 폐강일 이후 제외)
- 전임교원 이외 비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와 야간 강의료, 대단위 강의료 등은 '해당년도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 책임시간을 감면받는 보직, 연구년 및 휴직 등으로 인하여 한 학기를 강의한 경우

(보직학기 제외) 초과강의료 지급은 학부기준 학기당(주당) 11시간을 기준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학기 중에 책임시간을 감면받는 보직을 임명받은 경우 초과강의료를 지급하며, 다음 학기부터는 보직임용기간의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 병가 등으로 학기 중 강의가 불가하여 대체교원으로 강의한 경우, 초과강의료 산정은 해당년도 주당 강의시간을 합산 후, 병가 기간을 제외한 잔여 주를 기준으로 초과 시간에 대하여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7. 신임교원이 학기 중 임용된 경우 초과강의료 산정은 임용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학기 강의시간 합산이 불가능한 경우는 11시간을 기준으로 초과시간에 대하여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8. 팀티칭에 따른 강의료는 교수별 담당시간을 학기(15주)로 나누어 균등하게 지급한다.
9. 강의료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첨'과 같이 시행하고 수업시수의 산정은 전임교원 책임시간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1]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1.12.21., 2024. 01. 15., 2024.12.16.)
10. 대학원 소속 교원이 학부 강의를 담당할 경우 1, 2학기 포함하여 대학원 시수와 학부 시수의 합이 책임시수 초과 시 학부강의에 대한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11.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는 전임교원의 책임시간 외에 초과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지급되, 책임시간이 감면되는 교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정년퇴직을 이유로 책임시간이 감면되는 일반교원이 초과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21)

부칙(학사운영팀-238호, 2019.03.27.)

이 지침은 2019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사운영팀-583호, 2019.09.04.)

이 지침은 2019년 09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사지원팀-1147호, 2021.12.21.)

이 지침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사지원팀-6094호, 2022.11.03.)

이 지침은 2022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사지원팀-177호, 2024.01.17.)

이 지침은 2024년 0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사지원팀-3857호, 2024.09.2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학사지원팀-4537호, 2024.12.16.)

이 지침은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강의료 지급 세부기준 (개정 2019.09.04., 2021.12.21., 2024.01.17., 2024.12.16.)

가. 초과 강의료 (개정 2024.01.17., 2024.12.16.)

구분	주당시간	야간강의료	숙박비	대단위강의료	비고
일반교원 (임상교원포함)	연간 22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원	10교시부터 5,000원	-	- 165명 이상 5,000원 (10%이상) - 225명 이상 10,000원 (50%이상) - 300명 이상 15,000원 (100%이상)	
교육중점교원	연간 22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원	10교시부터 5,000원	-		
강의전담교원	연간 24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원	10교시부터 5,000원	-		
외국인교원	계약시간 초과시 시간당 22,000원	10교시부터 5,000원	-		영어:15시간/주당(30시간/ 연간)
겸임교수	9시간 초과시 시간당 24,000원	-	-		삭제 겸임교수임용규정 제7조
대우교수	계약시간 초과시 22,000원	-	-		영어:15시간/주당(30시간/ 연간) 중국:15시간/주당
초빙교수	9시간 초과시 시간당 24,000원	-	-		
채용형 산학 협력중점교원	-	-	-		
객원교수	-	-	-		

※ 전임교원(일반/교육중점/강의전담/외국인)의 초과강의료 지급은 ‘해당학년도 예산집행지침’의 5. 교직원의 제수당[강의료 : 5) 초과강의료]에 따른다.

※ 삭제 (2024.12.16.)

나. 삭제(2019.09.04)

다. 명예교수 강의료 : 강사의 강의료에 준하여 지급(단, 만 65세 이후에는 3시간 초과 시 강의료 미지급), 야간강의 시 시간당 2,000원 추가 지급 (개정 2021.12.21)

라. 석좌교수 강의료 : 계약서에 따른다.

마. 특별강좌 강사료 : 교양강좌 중 전문가 초청에 의한 특별강좌의 강의료 시간당 200,000원, 여비 50,000원.